

총괄보안책임자 · 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

(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,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)

구 분	선 박		항만시설
	총괄보안책임자	선박보안책임자	항만시설보안책임자
경력 또는 자격 취득 요건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,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. 국제항해선박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.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.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. 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이 있는 자	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	항만시설 운영에 종사한 경력 또는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전문 지식 요건	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(제3호 · 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	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(제3호 · 제4호 및 제6호는 선박에 관련된 내용만	법 제40조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서 제50조제6항 각 호(제3호 ·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

	해당됨)의 내용이 포함 된 보안교육을 18 시간 이상 받은 자	해당됨)의 내용이 포함 된 보안교육을 12 시간 이상 받은 자	용만 해당됨)의 내용 이 포함된 보안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
--	--	--	--